공고 제 46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07월 18일

구의제1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**	최** 1979-02-18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7-07-18